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(특허청 고시 제2020-9호)

◇ 폐지 이유

- 특허청 직원아파트(대전 유성구 궁동 소재) 매각계약이 체결('20.2.12.)됨에 따라 그 사용이 종료('20.4.13)
-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(국토교통부 고시 제 2018-45호)」 제103조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제3종시설물 지정을 해제
-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 제 692호)」 제4조에 의거, 표준 서식에 따라 제3종시설물 해제 사실 고시

◇ 주요내용

- 가. 표준 서식에 따라 제3종시설물 해제 대상 시설물의 개요, 해제사유 등을 고시